#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4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5.

발 의 자:서지영·박덕흠·박충권

송석준 • 이종배 • 박성훈

조경태 · 인요한 · 김용태

서일준 • 이인선 • 조정훈

이헌승 · 김승수 · 서천호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.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・벽지・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.

이에 도서·벽지·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어린이집 설치·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도서・벽지・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・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3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평가"를 "평가·해산"으로 한다.

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과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.

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"어린이집 운영 법인"이라 한다) 은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의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 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

-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인가,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효기간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---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 -----<u>평가·해산</u>----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 라 한다) 및 시・군・구(자치구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 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 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 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 •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------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

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직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<u><신 설></u>

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・
벽지・농어촌지역 등과 「인구
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
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
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
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
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
있다.
ll ll ll ll ll ll ll ll ll ll ll ll ll

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 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"어린이집 운영 법인"이라 한다)은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

등으로 그 목적사업 수행이 곤 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 영 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계획 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해당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

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수 있다. 다만,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산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인가,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.